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80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채현일 · 윤건영 · 김동아
박해철 · 이훈기 · 이상식
양부남 · 한병도 · 전용기
박용갑 · 박선원 · 김 윤
이해식 · 위성곤 · 모경종
정준호 · 박민규 · 최민희
정일영 · 황명선 · 오세희
박지혜 · 김준혁 · 노종면
강준현 · 정을호 · 박정현
김문수 · 황정아 · 손명수
김 현 · 김기표 · 김우영
신정훈 · 이재강 · 이광희
의원(3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

당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이른바 ‘현수막정당’에 의하여 게시되고 있는데,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 나.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정당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국회에 1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3.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현수막 표시 제한 등) ①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인 것
2. 혐오감을 느끼게 표현하는 것
3.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한 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이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37조의3에 따른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①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의 제37조의2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 대상이 된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의4(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그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2.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로부터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통지받은 정당현수막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당의 대표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정당에 한정하여 자당의 정책</u> <u>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u> <u>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할</u> <u>수 있다.</u> <u>1. 국회에 1인 이상의 소속의원</u> <u>을 가진 정당</u> <u>2.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u> <u>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u> <u>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u> <u>상을 득표한 정당</u> <u>3.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u> <u>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u> <u>정당</u> <u>제37조의2(현수막 표시 제한 등)</u> <u>①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u> <u>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u> <u>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u> <u>하여 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u>
<u><신 설></u>	

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인 것

2. 혐오감을 느끼게 표현하는
것

3.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4.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한
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이 제1항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37조의3에 따른 정당현수막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3(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①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현수막(이하 “정
당현수막”이라 한다)의 제37조

의2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
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둔
다.

②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국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
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
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
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당의 당원은 정당현수막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
다.

⑤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제
37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요
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 대상이 된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
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신 설>

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의4(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그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2.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로부터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통지받은 정당현수막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당의 대표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
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할 수 있다.